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박 소 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453
----------	------

발의년월일 : 2022. 9. .

발 의 자 : 박소영, 권기훈,
김태우, 류종우,
손한국, 이재화,
하병문 의원

1. 주 문

- 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6조,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나. 특별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가. 통합신공항 건설은 대구경북 미래 50년이 결정된다고 보고, 2030년 완공, 2035년 민간활주로 추가 건설을 통해 국가공항 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유사시 대응능력을 높이고 공항이 지방경제를 견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사업을 통해 대구는 K-2 후적지를 친환경 신도시로 조성하는 동시에 경북은 새로운 공항복합도시가 입지함으로써 통합신공항이 중·남부권 물류·여객 중심의 관문 공항으로 건설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함

- 나. 우리 시의회는 '16년 9월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추진 특별위원회와 '18년 7월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각계각층 관계자와 시민과 함께 통합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음
- 다. 2020년 8월 28일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가 최종적으로 선정되고 2020년 11월 착수한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민간전용 제2활주로 건설,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 반영 건의 등의 청사진이 마련되었으나, 공항건설과정에서 특별법 제정과 함께 남은 절차들도 차질없이 준비하는 것은 물론, 군위군 대구시 편입, 공항 접근 교통망 확충, K-2 후적지 개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음
- 라. 이에 통합신공항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경쟁력 있는 중·남부권 관문 공항을 건설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함

3. 참고사항

- 가. 제9대 대구광역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 활동기간 : 2022. 9. 30 ~ 2024. 6. 30 (약 21개월)
 - 위 원 수 : 7명 이내
- 나. 관련법규 : [붙임]

[첨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하고,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다.

⑥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을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다선,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